#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67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 엄태영 · 주진우 · 서범수

조지연 • 박덕흠 • 서천호

박형수 • 유상범 • 강명구

박정하 • 고동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8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 • 영어자금 • 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